

수원지방법원 2019. 7. 25 자 2018재나249 결정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7. 7 자 2019재나1133 결정
수원지방법원 2019. 7. 25 자 2018재나249 결정
수원지방법원 2017. 11. 30 선고 2017나70632 판결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7. 13 선고 2017가단101292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원고),항소인

A

피고(재심피고),피항소인

군포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김가은

변론 종결 2019. 6. 18

판결선 고 2019. 7. 25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7. 13. 선고 2017가단101292 판결

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. 11. 30. 선고 2017나70632 판결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,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1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.

3.16.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안양등기소접수제8450호로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재심청구취지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,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재심대상판결의 확정

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가. 원고는 2017 . 1. 26.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가단 101292호로 근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위법원은 2017. 7. 13.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 나 70632호로 항소하였고, 위 항소심 법원 은 2017.

11. 30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.

다. 원고가 대법원 2017 다 29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. 3. 29.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,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를배척한 것은 부당하고,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 1호 내지 제 11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,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, 원고 주장의 위사유는 위법조소 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
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,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창석판사 조장환판사 박소정

별지